

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보서

「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3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.

연구단체명	성북구 조례 연구회	
대 표	윤정자 의원	
연 구 주 제	우리구 조례에 대한 조사, 연구, 검토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조례 정비	
심의결과	내 용	구성인원: 9명
	결 과	연구활동 계획서상 내용 원안 승인
기 타		

2019년 2월 18일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임태근(인)



의원 연구단체 대표 귀하